

■ “우리나라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 체계의 실업함정 가능성”
(황수경·윤남희)

- OECD국가간 비교를 통해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에 따른 근로유인 저하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의 실업 직후 순소득대체율은 저소득 단신가구(53%)의 경우 OECD국가 중 5번째로 낮으며, 평균소득자(54%), 고소득자(42%)의 경우도 중하위권 수준임.
- 대부분의 OECD국가들과는 달리 자녀수, 가구주 특성에 따른 변화 없음. 장기실업자의 경우 순소득대체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짐.
- 우리나라의 한계유효세율은 OECD국가중 최저 수준
- 실업→파트타임: 약45%(낮은 순위로 4위),
- 실업→풀타임: 약35%, 풀타임→파트타임: 약10%로 최저수준

문의처 :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연구위원, 윤남희 객원연구원
Tel : 783-7155 E-mail : skhwang@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http://www.kli.re.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 체계의 실업함정 가능성

담당자	황수경 데이터센터소장 윤남희 객원연구원
전화	783-7155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구복지국가들처럼 높은 소득세율과 관대한 사회보장급여가 실업자의 근로동기를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있음.
 - OECD Tax-Benefit system의 국가비교자료를 토대로 조세 및 사회보장 급여가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순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이란 실직상태에서 받는 소득을 취업시 받았던 소득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수치로서 실직시 근로자의 소득보장 정도를 보여줌.
 - 근로자의 소득기준별로 실직 직후 순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저소득 단신가구(53%)의 경우 OECD국가 중 5번째로 낮으며, 평균소득자(54%), 고소득자(42%)의 경우도 중하위권 수준임.

〈표 1〉 실직후 첫 번째 달의 순소득대체율 (2002)

(단위: %)

	저소득자				평균소득자				고소득자			
	단신	자녀 2명			단신	자녀 2명			단신	자녀 2명		
		편부모	외벌이	맞벌이		편부모	외벌이	맞벌이		편부모	외벌이	맞벌이
프랑스	80	91	90	91	71	76	76	82	70	69	69	79
독일	63	90	83	99	61	83	78	96	62	79	71	91
일본	73	81	70	88	63	74	61	81	62	63	61	76
한국	53	54	52	77	54	54	53	73	42	42	41	61
스웨덴	82	92	90	92	81	90	83	90	58	69	61	73
영국	63	47	48	73	45	46	46	61	31	34	34	49
미국	62	54	52	83	56	54	53	76	40	39	38	62

주: 1) 평균소득자는 생산직 근로자 평균임금(APW) 수준을 받는 근로자를 가정하고 저소득자는 APW의 67%, 고소득자는 APW의 150%를 받는 것으로 가정.

2) 맞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임금은 APW의 67%를 받는 것으로 가정.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2004.

- 자녀수 및 가구주 특성을 고려한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다른 OECD 국가와는 달리 순소득대체율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맞벌이가구 제외).
 - 장기실업자(실업 후 5년경과)의 경우 순소득대체율은 단신가구는 절반 이하 수준(25%)으로 떨어지나, 저소득층의 편부모 또는 외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회보장급여로 실직 직후보다 증가
- 한계유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s)이란 취업상태 변화에 따른 소득변화가 있을 때 조세와 사회보장급여가 근로자의 소득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소득보장의 측면을 포착하는 순소득대체율보다 조세와 사회보장급여의 근로유인 측면을 보다 정확히 포착
- 즉, 한계세율이 높으면 실업자는 재취업을 할 동기가 줄어들어 실업함정(Unemployment trap)이나 저임금함정(low wage trap)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증가함.
 -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실업자가 파트타임으로 취업할 때의 한계유효세율은 70~90%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약 45% 수준으로 일본, 그리스, 아일랜드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국가에 해당

〈표2〉 취업상태 변화시 한계유효세율 (2002)

(단위: %)

	실업 => 파트타임				실업 => 풀타임				파트타임 => 풀타임			
	단신	자녀 2명			단신	자녀 2명			단신	자녀 2명		
		편부모	외벌이	맞벌이		편부모	외벌이	맞벌이		편부모	외벌이	맞벌이
프랑스	75	80	80	72	78	79	79	76	36	62	73	30
독일	101	111	105	140	77	87	82	96	54	66	55	52
일본	18	33	14	20	56	64	52	60	21	71	66	27
한국	45	46	44	45	35	36	35	35	9	10	13	9
스웨덴	87	91	87	87	87	91	87	87	35	55	65	35
영국	78	14	18	57	58	50	51	44	37	87	84	32
미국	70	50	43	66	69	61	58	65	29	51	53	26

주: 1. 실직전 평균소득자(=APW의 100%)를 가정하고 사회보장급여는 실업 직후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2. 파트타임은 풀타임의 1/2시간 근무하는 자료 정의됨.

자료: OECD, 『Benefits and Wages』, 2004

- 실업자가 풀타임으로 취업할 때의 한계유효세율은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35% 정도로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파트타임에 풀타임으로 변화한 경우의 한계유효세율 역시 10%미만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풀타임 취업에 따른 한계유효세율이 작기 때문에 파트타임 취업보다는 풀타임 취업을 선호하는 시스템. 이는 풀타임 취업에 따른 METR이 파트타임 취업의 경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일본의 경우와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임.
- 요약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의 근로비유인 효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 오히려 지나치게 낮은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빈곤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
-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에 비해 한계유효세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세의 비중과 실업급여 수준이 모두 낮기 때문임.
 - 또한 우리나라 조세와 사회보장급여 체계는 근로자의 가구특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정책목표의 관점에서도 허점을 보여주고 있음.
 - 정책타깃별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세와 사회보장급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파트타임 취업으로 인한 한계유효세율을 낮춰줌으로써 여성, 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